

경운대학교 교직원복지·전문성개발 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교직원의 복지 및 전문성개발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교직원 복지·전문성개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의 구성은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교학처장과 행정지원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, 기타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,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. <개정 2021.10.01.>

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행정지원처 직원이 된다. <개정 2021.10.01.>

제3조(위원장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제4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,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연임할 수 있다.

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한다.

1. 복지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한 계획의 심의
2. 복지시설의 임대계약체결 및 관리 감독
3. 복지기금의 조성 및 사업수익의 관리와 운영
4. 복지 및 전문성 개발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6조(회의)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결과보고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무처리) 위원회의 제반사무는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21.10.01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